

제43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3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
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9)
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8)
4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6)
4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0)
4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7)
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4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9)
5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5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2)
5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5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7)
5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8)
5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79)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7)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5)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2)

6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3)
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74)

상정된 안건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 7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 7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 7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 7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 7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7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2) 8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5) 8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8
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8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 8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 8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31) 8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8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8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8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8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8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8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8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8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8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8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8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8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8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8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8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8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	8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	8
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8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8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8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8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8
3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 ...	8
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8
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9) ...	8
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8) ...	9
4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6) ...	9
4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0) ...	9
4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	9
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7) ...	9
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	9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	9
4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9) ...	9
5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9
5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2)	9
5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9
5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9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7)	9
5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8)	9
5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79)	9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7)	9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5)	9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2)	9
6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3)	9
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74)	9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이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해식입니다.

오늘 후반기 첫 법안소위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과 국가행정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법안들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안 한 줄, 문구 하나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고견을 경청하고 여야를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산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안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양부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법안1소위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과 관련되고 국가의 미래, 행정조직에 관련된 중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입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법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권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과 그리고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배워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위원들 간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속도가 안 나

가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소소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또 진도를 기다리는 법들이 많이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오늘 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여야 간사님들 간에,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걸로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빨리해서, 저희들이 법안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성과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밀려 있는 법안 책임감 있게 잘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4·3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특별법처럼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편향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인데요. 민주당 의원도 대표발의했고 저도 했고, 이게 2024년에 발의된 법안인데 전혀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속히 여야 협의를 거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의 채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잘 모시고 속도감 있게 민생법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주 사건으로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 경찰이 많은 실망을 지금 시켜 드리고 있는데 행정위원회, 특히 경찰 출신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24년도, 지난 21대 때도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이나 아니면 단순 가출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 실종법을 21대 때도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마련이 됐지 않고 22대 재선되면서 다시 24년도에 제가 성인 실종법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발의를 해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에는 성인 실종법이 마련돼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틀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지체장애인, 치매 이런 사람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위치 추적, 이동경로 추적, DNA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하지요, 실종 여부 판단할 때.

그런데 실종 당시 18세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가출이라는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저도, 작년 1월 10일 날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행안위에서 축조심의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하나는 경찰청의 업무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 침해도 있는데.

이번에 제주 사건을 보면서 과연, 다시 이 법안을 심사한다면 경찰이 똑같은 변명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변명이 의미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실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1소위가 될지 2소위가 될지는 모르나, 아마 1소위 같아요—이 법을 심사한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성인 실종법은 2소위 법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검토할 사항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했고 9월 달에 꼭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총 61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1)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2)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1)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8)
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3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
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9)

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8)
4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6)
4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0)
4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7)
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4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9)
5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5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2)
5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5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7)
5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8)
5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79)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7)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5)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2)
6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3)
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74)

(10시14분)

○소위원장 이해식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차관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행안부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법안심사제1소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주요 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이 소위를 이끌어 주시게 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안전부 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지원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심사

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오늘 총 5개의 주제를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 주제,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의 장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행안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공유재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인데 이해식 의원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 재량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번,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며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안 6조의3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진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18조의4를 보시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광희 의원안은 행안부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 행안부장관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행안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이광희 의원안은 3호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

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혹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44의조2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광희 의원안을 보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지자체와 행안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44조에 따른 실태조사, 즉 지자체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유재산 총조사를 행안부가 실시하면 지자체에서는 비용도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44조의2 2항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행안부장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게 미리 알려 줌으로써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단 2건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조승환 의원님 안과 이해식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전문위원회에서도 의견 주신 것처럼 이해식 의원님 안으로, 재량규정으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2개 다 동의하는데 재량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8쪽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에서 자구 수정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새로운 게 공유재산의 분석·진단, 8쪽입니다. 행안부장관이 분석·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사실은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임호선 위원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소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전문기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분석·진단을 했으면 그 분석·진단 결과가 어떻게 쓰인다는 거지요? 하지 않

아도 될 일을, 아니면 그 자체 업무에 대한 이게 새로운 규제, 뭐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규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분석·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소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답변드리면 사실 크게 국유재산
과 공유재산으로 분리 체계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은 과거 기재부
였는데 지금은 재경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캠프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재산인 공유재산은 243개의 지방정부 각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기준
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2024년에 이걸 한번 처음으로 총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부에서 누락됐다거나 경계도 모호하다거나 이래서 그때 보도자료
도 났습니다만 저희가 1만 5000, 7000건에 20조 원이 장부에서 누락된 걸 찾아냈어요. 그
래서……

○**임호선 위원** 잠깐.

그런 현황의 문제점을 말씀 주시기보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분석·진단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어차피 결국은 다 세금인 건데 그리고 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겁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캠프와 같은 그런 전문기관이 행안부에 필요하지 않냐,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도 캠프 같은
걸 자치단체별로 만들면……

○**임호선 위원** 아니, 자치단체별로는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
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있는 공공 산하기관이나 이런 걸 통폐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LX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적……

○**임호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다가 일단 위탁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
고요. 향후 이게 성과도 나타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주시면 저희가 지방 공유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임호선 위원** 잠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다 수궁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
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앞으
로 이렇게 분석·진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적 대안까지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여기까지 저는 다 수궁을 했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사실 저희 행안부는 공유재산정책과를 새 정부 들어
서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팀 정도만 있었는데요. 하여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
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시스템이 엑셀 같은 장부로만, 주소만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AI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첫 단계라고……

○임호선 위원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은 있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임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도 일부 운영료나 시스템 구축비를 내야 되는 데에 다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질문이 있어서요.

차관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의를 해요.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실익이 있고, 국민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일반 국민들도 어디에 어떤 공유재산이 있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당연히 그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즘은 이제 다 투명한 정보 운영을 해 나가니까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청구 절차 없이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호선 위원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정보를 주민들이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 제고가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할 가능성은 많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여기 자체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게……

○서명옥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국비 전부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같이 이제……

○서명옥 위원 그 매칭펀드 비용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이제 총계획이 나오게 되면 나눕니다. 예를 들면……

○서명옥 위원 아니, 지금 대충 러프하게. 그 계획은 다 수립돼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맞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정보시스템은 BPR/ISP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단계 거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게 올해 7월 중에 전반적인 계획은 나왔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1년도, 2년도 계획이 나오고 또 지방정부별로 얼마를 매칭할 건지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그 기준이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많은 데가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 보통 세입세출의 0.001%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서명옥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용하면 지방정부가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재정 당국의 입장은 이것은 지방정부를 위한 시스템인데 왜 정부 부담, 국비 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저희가 ISP 비용은 2억 4000만 원을 어렵게 확보해서 이것은 국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일단 시작은 국비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위탁운영 하게 되면 국·시비로 같이 분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위탁하고 공유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한다? 그것은 저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 시스템의 이용자는 누구나 하면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위탁을 했을 때 위탁운영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제가 여쭙본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부담금은 사실 사용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산 사용료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부담률을 다르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산 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제 생각인데 구축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용료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이용을 최소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한다고 하시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용료라기 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유지관리비면 공정하게 저는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총금액에 따라서 달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직은 이용료,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분담할지까지는 못 나가 있는데 합리적인 게 되도록 잘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큰 틀에서는 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후에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결정이 되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잘 받들고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지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왜 행안부가 해야 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행안부장관이 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관리 비용 부담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비용 부담이 정말 5대 5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공유재산이 많은,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을…… 차라리 이 법에 행안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안부장관이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재산이니까 해 왔는데 관리라든지 활용이 되게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총조사를 했더니 15만 7000건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었고요. 그 금액을 대충 환산했더니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권영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조사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과 주민들도 필요하면 정보를 이용하도록 법제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법을 만드는데 왜 행안부장관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얼마만큼 협의하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참석했던 워크숍도 강릉에서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저도 지방에 근무하고 위원님 시장도 하셨지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사례도 서로 공유를 하고요. 또 잘 보시면 지방정부 개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지방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간에 환지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것을 검색만 하면 면적과 가격이 딱 나와서 좋고요. 이것은 지방교육청도 들어가니까 교육청의 폐교 같은 경우 시군구에서 그 현황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 활용되지 않는 폐

교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권영진 위원 개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다 이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같이,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특별히 이 법안 자체에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오늘 첫날이라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간단히 하나 말씀하고 보충설명을 올리면,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44조를 보면 현행 공유재산법에도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총조사를 하고 총조사를 할 때는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좀 내라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 매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조사는 5년마다 해서 국가 전체가 나오고 그해에는 지자체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3번부터 마지막까지 총 3건의 주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재난 복구·구호 목적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명확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복구·구호와 관련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일반재산 대부료 면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용료 면제에 관련해서는 현행은 재난 입은 지역 주민 일시 사용허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재난 입은 지역 주민 일시 사용허가라고 하여 재난 복구·구호 목적을 좀 더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동의는 하계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에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재난 입은 지역 주민 일시 대부의 경우는 대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안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사용료 면제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대부료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문제이고 대부료는 일반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으로서 재난 복구·구호 목적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도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 없게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4번,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절차 완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복구 사항을 정리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용료랑 대부료 감면 절차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시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은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면제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지 않고 사용료·대부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만 공유재산심의회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이광희 의원안 개정안을 보시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이렇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면제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으로서는 개정안처럼 감지 혹은 감면의 사항은 그대로 두고, 아까 앞서 드린 재난 복구 부분만 면제를 하고 감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그대로 둘지 부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18쪽의 3번, 재난 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셨거든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도 재난 복구·구호 목적일 때는 동의를 불요한 것으로 해 주시면 신속하게 이재민들 복구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3쪽에……

○소위원장 이해식 사용료는 지방의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용료랑 대부료 모두 면제해 주셔도 재난 복구에 한해서는 신속하게 복구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런데 여기 수정안이 지금 사용료 면제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 뒤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아닙니다. 일단은 주제가 2개라서 그렇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것은 18쪽의 재난 복구·구호 관련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복구·구호 목적에서 절차를 완화하는 것 하나, 두 번째가 일반적인 사항에서 완화하는 내용,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차관이 말한 것은 18쪽의 3번 상황으로서 재난 복구의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도 개정안과 달리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23쪽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27쪽에 봐 주시면 이광희 의원님안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광희 의원님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호, 6호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호가요.

○소위원장 이해식 5호가 중복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이것은 이광희 의원님안으로 정리를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 6건의 주제를 논의하시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소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인 주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면서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관리를 강화하고 기록물관리 총괄·지원 체계와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며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및 지자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2쪽입니다.

1번과 2번, 2건의 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및 복원·보존 지원 체계 정비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국가기록원장이 아닌 행안부장관이 국가 및 지자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3페이지의 제목을 보시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복원·보존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지금 2페이지와 3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장 이해식 2~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처음에는 1페이지 말씀드렸고 지금은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수석전문위원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 와서, 제가 1번과 2번 주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서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및 복원·보존 지원 체계 정비 관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큰 제목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주체 및 대상을 조정하고 3페이지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록물 복원·보존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아까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술적인 복잡함으로 수정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저희 수정의견으로서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통상의 기록물 외에도 이번 기회에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 사항을 체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정의견으로서, 그 개념으로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행은 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것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행안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 자체는 행안부장관이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에게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행안부장관이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한다’고 했는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 외에도 지방공사나 특별 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기록물도 다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국외기록물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구조를 보면 총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행안부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보다 더 넓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항은 행안부장관은 방금 말씀드린 1항의 사항과 아래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현행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거기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에다가 기록물의 보존·관리 임무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5항을 보시면 개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 보존(보존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보존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아서 체계상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대신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 수행한다’는 표현이 되게 모호합니다. 또한 이런 민간이나 국외기록물은 일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수행한다가 마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로 좀 더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번 공공기관 기록관리 및 이관체계 정비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준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 이관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기서 준기록관 제도는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지정한 부서가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체계를 준기록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준기록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의무 주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9페이지에 보듯이 개정안은 기록물 관리사항 보완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대상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정의견을 통해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개정안은 14조에 의해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합니다. 현행 헌법 75조에서 저희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을 통해서 좀 더 대통령령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13조 1항, 즉 현행의 기록관과 14조 1항은 현행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준기록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현행 기록물 관리·보존기간에서 방법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현행은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30년 기간이라는 게 법에 명시하는 게 좀 더 경직됩니다. 그리고 30년에 따라서 자료 중요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간만으로 명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수정의견을 낸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좀 더 명시하여 ‘보존기간이 영구로 분류된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서 현행 30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좀 더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또한 단서를 추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한……

14쪽입니다.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이관을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관을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4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전자기록물이라 한다)’, 이 경우는 전자는 특수하기 때문에 현행에서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정안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로서’ 전자기록물을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다시 구체화하여서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이러한 전자화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자화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특례를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큰 틀에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일부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은 다 포함되도록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총괄·조정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합니다. 원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명확히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기록관리 및 이관체계 정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큰 공공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공기관에는 기록물을 전담으로 하는 데가 없이 총무과나 이런 데서 팀이나 직원이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시행령에 따라 준기록관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좀 올려서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준기록관 설치 대상도 명확히 하고 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이관 대상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전자기록물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법안에 설명을 해서 이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14쪽에 수정의견 주셨는데 이거 그냥, ‘협의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 보통 일반적으로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아니, 법안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협의를 거쳐’라든지 그냥 ‘협의하여’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셨으면

전문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16쪽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 4건의 주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3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자료요청권 정비 관련입니다.

오른쪽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자료제출·의견진술·보고 요청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기록관리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좌측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은 도표로 정리해 둔 바와 같습니다.

조문대비표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0쪽 개정안 하단에 9항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따를 때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전문위나 특위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경우에도 전문위나 특위에서 심의를 해 버리면 바로 위원회 전체 의결을 봐 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정의견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이 1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0항을 보시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임직원의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관리기록위원회는 행안부의 심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자료 요청하면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야 되는 기관에 헌법기관은 다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권한을 좀 더 분명히 하면서 협조 부분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정의견은 행안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즉 위원회가 의결한 거고 행안부장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는 식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즉 자료제출 권한과 협조 권한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서 헌법기관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 확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현재 심의회 구성은 총 7명으로 민간 4명, 내부 3명이며 주요 기능은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6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7명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15명의 위원으로 하면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15명의 3분의 2인 10인 이상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 낸 바는 15명을 딱 경직적으로 하면 구성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좀 더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의견을 재량적 판단사항을 두 가지를 두었습니다.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서 15명의 3분의 2는 10인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을 위촉한다라는 걸 하나 안을 두고, 반대로 다른 하나의 안으로서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안도 두었습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2가 들어온다는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총 7명 중에서 민간위원은 4명, 내부는 3명이어서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3분의 2로 할지 과반수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5번 민간기록물 지정·보존 및 지방기록유산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오른쪽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안부장관으로 정비하고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통한 민간기록물 발굴을 강화하며 지자체에도 지역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지정·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1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현행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다 행안부장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록물관리의 총괄 주체를 행안부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조항을 바꿔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이러한 명칭, 권한 변경 외에 31쪽 하단의 7항을 통해 개정안은 국가기록물 추천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다음, 32쪽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기록물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45조의2에서 1항은 지자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수정의견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민간기록물 중 지역의 역사·문화·경제·생활상 등을 보여 주는 등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2항입니다, 현행 개정안에서 지정·보존 등은 행안부장관을 지자체의 장으로 본다면 준용하고 있는데 앞서 개정안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지정·보존 외에도 해제, 변동사항 관리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지정기록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지자체지정기록물심의위원회 등 국가지정기록물과 지방지정기록물의 준용 대상과 주체를 구체화하고 명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또한 지자체지정기록물임에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 영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6쪽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적용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16페이지의 3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자료요청권 정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도 전문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내려 줌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의 4번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 확대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위원을 더 많이 위촉함으로써 공개를 더 많이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15명으로 해 버리면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지금 7명인데 7인에서 15명까지 확대하고 그러면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할 거냐, 3분의 2로 할 거냐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원들이 많으시면 아무래도 기록물 개방하는 데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과반보다는 3분의 2로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5번은 민간기록물 지정·보존 및 지방기록유산 관리체계 마련인데요 이 부분도 국가지정기록물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국가지정기록물에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해 가지고 주니까 지정됐을 때 조금 격을 올려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방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신설하는 겁니다. 또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관계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명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부칙도 6개월로 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22쪽. 전문위원님, 아시다시피 15조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조항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10항을 신설하면서, 이게 법기술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조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내용을 담는다 하더라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출석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문이 구성되어야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조항을 두면서 불쑥 10항에다가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조문이 만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러면 일단 내용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맞춰서 저희가 형식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록원에는 헌법기관, 대법원이나 국회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심의기구의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구조는 맞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만 임호선 위원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한다든지 별도로 조항을 뺀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리해서 조항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 정비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소위원장 이해식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나 또 임호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34페이지에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이 부분들은 오히려 개정안대로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앞에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법에다가 ‘지역의 역사·문화·경제·생활상 등을 보여 주는 등’ 이러한 걸 붙일 필요가 있나요? 그러고 보면 또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앞부분들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데 좀 제약을 두는 걸로 작용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그냥 개정안대로 두면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위원님, 하나 대안을 말씀을 올리면 개정안과 수정의견 한 중간 정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올리냐면 현행 국가기록물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가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돼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보면 보존가치가, 당연히 기록물은 보존가치는 높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예컨대 ‘국가기록물은 영구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식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의견에 좀 강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되 현행 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 여쭙습니다.

○권영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구히라는 걸, 지방기록물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를 들면 국가기록물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좀 더 구체화된 용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한정해 보면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인데 민간기록물은 당연히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의견처럼 구체화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현행 개정안보다는 조금만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되 용어를 적절한 걸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 수정의견은 민간기록물 중에 지역의 역사·문화·경제·생활상들을 보여 주는 등 지역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그래서 국가기록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기록물에 차이를 두는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은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 기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임호선 위원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것 그렇게 지역적으로 묶어 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열어 놓으면…… 이게 민간기록물 중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권영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저도 권영진 위원하고 임호선 위원에 동의하고요. 현행으로, 수정의견에 보면 너무 구체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제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은 심플할수록 좋은데 이것 조례도 아니고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래서 개정안으로 하되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안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호선 위원 공유재산법은 가결 안 하십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그건 그 뒤에 또 다루기 때문에 묶어서 의결하려고 지금 남겨 놔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9건의 법률에 대한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의 표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주시는 경우 앞서 한 공유재산법과 함께 대안으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자료 목차를 보시면 지자체 유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등 총 2건의 주제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지자체 유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등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즉 올해 7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쪽에서 보시는 총 9건의 법률에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는 바와 같이 현행에는 통합특별시나 통합특별시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법들은 원안 의결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참고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19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11조 1항을 보시면 ‘다른 법령에서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개정안처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정안의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하면 보다 확실해지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1조 하단에 제주도법을 보시면 9조 3항에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각각 하기 때문에 둘 다 기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김으로써 각 개별법에서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이게 제주도만 말하는 건지 강원도만 말하는 건지 전북만 말하는 건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칙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적용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특별시 인용을 명시하는 것과 같이 제주도의 경우는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본질적 이유 중의 하나는 제주도나 세종시와 같이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특별한 광역지자체가 생기고 있고 또한 통합특별시나 특별자치도나 특별시처럼 특별한 광역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광역의회의 유형과 권한 등을 좀 더 정비해서 법 체계에 혼선이 없는 중장기적 방향이 필요한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 마지막 사항으로서 지방채 발행 특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채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2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는 지방채 발행 특례가 있고 이에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채정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주도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는데요, 9개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잘 아시겠지만 통합특별시가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그때 법 바꾸면서 많이 바뀌 줬는데요, 이것 유형이 추가되는 부분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법안,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의 유형, 새로운 종류가 추가되는 거라고 그래서 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22쪽의 지방채 발행 특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른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 통합특별시장의 지방채 발행 특례를 지방채정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각 8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총 3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새마을금고법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안건 상정 안 하나?

○소위원장 이해식 예?

○서명옥 위원 하셨어요.

○소위원장 이해식 의결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상정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저희 처음에 모든 법을 일괄상정하셨습니다. 총 60건 이상의 법률을 처음에 일괄상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심사자료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등 총 4개 주제입니다. 4개 주제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1번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허용 및 손실금 보전 순서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손실 발생 시 법정적립금과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이월금, 회전출자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입법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를 대손금의 상각과 해산 시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손실 보전 시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정적립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있는 대손금의 상각은 해산 시에 발생한 손실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실 보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적립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정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손실 보전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협과 수협의 경우 법 제정 시부터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을 허용하고 있고 신협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한 이유로 2023년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규제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도 법정적립금으로 손실 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의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편 손실금 발생 시 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채현일 의원안은 신협과 같이 미처분잉여금을, 고동진·이달희 의원안은 지역농협 및 수협과 같이 미처분이월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손실 보전 순서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상 봤을 때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동일하게 실무상 처분전이익잉여금이라는—새마을금고 회계업무 방법입니다—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처분잉여금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탁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안은 4쪽 좌측에 보시면 현행 새마을금고는 손실 보전 대상과 순서를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하고 있는데 신탁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있고 저희 수정의견도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도 신탁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 외에 고동진 의원안은 손실 발생 시 회전출자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출자금은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을 출자한 것이므로 회전출자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할 시 자본금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를 조문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8쪽에 보면 35조에 법정적립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을 보시면 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손실금의 보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따를 때 손실보전금 외에는 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즉 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해 두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번 외부 전문가의 상근감사 선임 허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닌 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8000억 원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 그 자격요건으로 회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증한 회원만이 상근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자만이 감사를 맡게 되는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외부 전문가가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것을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성 차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3번 중앙회장 임기 4년 일원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로 선임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 등의 남은 기간에서 4년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최초에는 4년을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보궐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할 수 있어 짧은 재임기간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중앙회장도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15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중앙회장과 상근감사 선출에 관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허용이나 손실금 보전 순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실험 등 타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보아도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쪽의 외부 전문가의 상근감사 선임 허용 이 부분도 보시면 자산총액이 8000억 원 이상인 지역금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새마을금고가 전체 1251개가 있고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8000억 이상은 3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근감사가 9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회원으로 2년 이상 해야 되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든 데 하는 건 아니고요, 비상임까지는 아니고 8000억 이상 대형 금고에 한해서는 상근감사를 두어서 좀 더 외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건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회장의 임기 4년 일원화는요 이게 일단 증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는 남은 임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도 임기가 시작할 때부터 4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위원장님, 10쪽 관련해서 의사진행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의 상근감사 선임 허용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전국에 몇 군데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농해수위 같은 경우도 농협 사안 다룰 때는 현황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거든요. 자산총액 8000억 이상인 지역금고가 몇 군데고 그래서 상근감사가 몇 명이고 왜 필요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그런 자료를 지금 답변하시는 데는 갖고 계시면서 답변을 주시는데 정작 저희들은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내용만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자료 준비를 해 주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적극 협조 그리고 자료 요청이 있으면 하고.

사실 저도 안전 검토하다가 몇 개나 해당이 되나 궁금해서, 이게 오늘 추가로 받은 자

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임호선 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 아무리 여야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기본은 당연히 챙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앞으로는 더……

○정춘생 위원 아니, 오늘 내로 만들어 주세요.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법안 심의하다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정부 의견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경우에 정부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첨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의견이 다를 경우에 중요하게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할 때는 간혹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잘하셔서 가지고 위원님들 법안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현일 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재무 상황이나 전국 지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경기침체기고.

그러면 지금 법정적립금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쌓여 있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법정적립금은 2조 7363억이고요. 지금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신탁은 조합 수가 862인데 9000억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것 2배를 뺀다 해도, 한 오륙천억 원을 쓰면 건전성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7쪽 하단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탁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일단 신탁하고 많이 비교하면서 신탁 수준으로 건전성과 재무구조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이라든지 부실채권 매각 같은 이런 것을 금융위, 금감원하고 협조해 가면서 TF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해서 매달 회의도 하고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정적립금이나 미처분잉여금도 그렇고 다른 상호금융, 그러니까 수협이나 농협이나 비슷한 데하고……

이 외에도 혹시 새마을금고에서 형평성이나 균형 차원에서 개정 요구 같은 게 있나요? 이 법안들 말고 그런 요구가 있나요? 이제 거의 다 균형을 맞춘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사실 제가 와서 새마을금고를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을 쫓아가서 수익률 위주로만 가서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PF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꺼져 버리니까 손실 폭이 2022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중앙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이 구속도 되고 아마 지금도 수감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자 해서 연임제도를 없애고 4년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로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기는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관부처가 됨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를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모토하에 지역공동체,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회원 위주로 대출이라든지 신용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신용금융의 뿌리 같은 역할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의 세세한 내용에서 차별이나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이 법안 처리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좀 더 자율성을 제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넣었다가 지금 하나씩 찾아서 다른 신용상호금고 수준으로 풀어주고 있는데요, 찾아내서 또 건의가 있으면 법률 개정 사항은 법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권영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권영진 위원 차관님, 우선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신탁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른 데처럼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쓰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법정적립금을 두도록 한 이유가 뭐지요? 법정적립금을 왜 이렇게 두도록……

그런데 법정적립금을 이렇게 손실 보전에 쓰도록 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사항은 없습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금융기관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법정적립금만 놔두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적립금도 크게 보면 금고의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적립해 놓게 한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제한해 놔습니다. 금고가 해산하는 경우……

○권영진 위원 그건 내가 알겠는데 이게 지금 금고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손실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고위험 투자라든지…… 지금 금고, 금고마다 부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계속 합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서 무리하게 고위험 투자를 하거나 신중하라는, 이런 도덕적 해이 부분을 방지할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손을 법정적립금으로 보전해 버리면 실제로는 손실인데 장부상 흑자로 착시현상을 일으

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지금 다른 농협, 신협은 금융위원회의 직접 규제를 받잖아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행안부에서 법정적립금 사용범위를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 혹시나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투명성이 저하된다든지 회계적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법정적립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이 부분들은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융위, 금감원하고 통합을 해서 동일 업종·동일 규제라는 그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제한규정은 저희가 새마을금고와 다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재무제표가 너무 낮게만 나타나면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를 손실에 좀 쓸 수 있게끔 풀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무모하게 막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다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닿아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앞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람이 상근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다 얘기가 된 사안이라서 이 법안에는 저도 찬성하겠습니다만 현황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7쪽에 보시면 새마을금고하고 농협하고 신협하고 있는데 법정적립금 규모라든지 총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상근감사, 외부 전문가를 선임을 하는 게 8000억 원을 지역농협 기준으로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신협 기준으로 보니까 2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상근감사 제도를 신협은 더 간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봤다면 이게 8000억 원 이상 가지고 되겠냐, 예를 들어서 기준을 한 5000억 원으로 좀 더 낮춘다는 의미는 상근감사 선임의 폭을 넓히면서 외부 전문가가 더 꼼꼼하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잘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총액 800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대체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더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 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 나와

계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영진 위원 지금 부실 생긴 새마을금고를 인접해 있는 금고하고 합병을 하잖아요. 합병을 하면서 MCI 수수료라는 거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받아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자구노력을 해도 1년에 MCI 수수료를 주고 나면 이게 오히려 적자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합병을 한 거는 부실을 털고 독립적으로 가라는 건데 이 MCI 수수료 자체가 합병된 새마을금고에 재정의 건전성과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상의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위원님, 사회연대경제국장입니다. 이방무라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계속 있어서 합병한 이후에도 건전하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합병, 그러니까 인수 금고가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권영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데요. 법정적립금의 얼마까지 손실금 보전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제한 한도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 보시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처분잉여금이 있으면 일단 잉여금으로 하고 그다음에도 손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면, 보통 특별적립금을 수익이 많을 때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리고 또 임의적립금이 있으면 그걸 쓴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법정적립금을 마지막 수단에 쓰는 거지, 다른 잉여금이 있는데 법정적립금을 쓸 수는 없고요. 이것을 개정해 주시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거나, 할 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시다시피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뱅크런 이런 거……

○서명옥 위원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된 규정도 안 지키고 PF 일으켜서 나중에 막대한 손실도 나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횡령금도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고의 재무 구조가 저는 상당히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기강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감사 기능이 좀 더 철저해져야 새마을금고가 좀 더 건전성 있게, 새마을금고의 본연의 업무를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이후로 새

마을금고 개혁 혁신 TF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비전 2030 해서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주기적으로 합동감사를 계속하면서 이사장의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게 1251개나 되고 그동안은 행안부도 너무 손 놓고 있었고요. 전담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 만들고 과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금융위처럼 금융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서 필요하다면 행안부가 금융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한 번씩 관리감독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옆에 담당 국장도 재경직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도 재경직. 행안부에 재경직 두세 명밖에 없는데 거기를 앉혔고요. 그다음에 금융위하고 아예 인사 교류를 해서 새마을금고 담당 사무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보완설명……

○소위원장 이해식 예,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임호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8000억 원 이상이 자산인 경우는 상근감사를 둘 수 있는데 그 8000억 원은 법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현행법 18조 3항에 보면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법정적립금 문제는 법률의 문제와 실제 시행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에서 아예 못 맡게 막혀 있는 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풀어 주는 거 하고 현재 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8000억 원 부분도 법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제도는 풀어 주되 실제 행안부에서 감시·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어떤 법률과 시행령 간의 차이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보완설명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에서 이 시행령 개정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해서 운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 잘 해서 입법 개정 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금고 이거 진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늘 하고요.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까지 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콘퍼런스 콜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

한 결과를 반영하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총 13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12시 10분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지방자치법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 9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분할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주제에 대해서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1번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5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과 수정의견은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는 이미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 올림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양부남 의원님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2번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 명확화입니다.

왼쪽 박스 보고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보장과 조례·규칙 한계 부분입니다.

먼저 자치입법권 보장과 관련해서 현행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안은 하위법령의 의미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로 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안은 ‘포함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규칙 한계와 관련하여 현행은 시군·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안은 시군·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은 다음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무를 총 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법령에서 시도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두 번째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공동 수행하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고 돼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면, 만약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에서 하는 경우는 부령에서라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하거나 현행을 두거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면 만약에 개정안을 반영하신다 하면 양부남 의원님 안처럼 ‘훈령·예규를 포함한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 ‘법령은 훈령·예규를 말한다’고 하면 여기 법령에는 대통령령·부령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훈령·예규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과 부령 외에도 훈령·예규가 포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함한다고 좋습니다.

다만 현행 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한정해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위임에 따르는 훈령·예규가 조례나 규칙을 함부로, 조례 이상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 전체 체계를 봤을 때 약간의 혼선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쪽의 하단에 말씀을 드려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서 법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1항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28조 2항의 하위법령에 괄호 열고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다른 조항에, 예컨대 192조 1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즉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이 조항에만 넣었을 때는 다른 법령 간의 관계가 조금 모호해지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범위가 확장돼서 훈령·예규가 들어간다고 포함되면 192조는 반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즉 훈령·예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의 요구한다는 식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신 개정안은 현행 조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항에만 넣어서 명확해지신 건지 혹은 이 조항에 넣어서 명확해졌지만 다른 조항의 관계에서 좀 더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지는 않으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행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부남 의원님 안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해서는 아니한다면서 3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한 사무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해석상 조금 모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이 3개 업무를 빼고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위반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3개만 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많은 사무 중에서 이 3개만 위배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위배해도 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명확성 부분입니다.

1호에서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인데 저희가 통상 법률을 만들 때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하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정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광역에 위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는 그 부분을 위배해도 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서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는 위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무고 그 경우는 위배가 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을 고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시군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조가 개정안에 반영되면 여기서는 위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작 현행 12조에서는 위배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충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4쪽의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은 현재도 주민e직접이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치법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좀 명확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구를 조정하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쪽인데요. 조례의 자치입법권 관련해서 규정 명확화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식 의원님안하고 양부남 의원님안이 있는데요. 보니까 ‘말한다’로 하면 훈령·예규 및 고시만으로 한정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양부남 의원님안인 ‘포함한다’로 해서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까지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리고.

조례·규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현행은 지금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양부남 의원님안은 이것을 1·2·3의 세 가지 용어로 좀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실무를 봤을 때도, 법제처와 해서 지금까지 시도나 시군구 조례 갈등이 있는 사항이 여기 다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주 아주 제한적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사무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시군구 우선으로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행정안전부 입장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으로 하셔도 되고 양부남 의원안으로 가도 좋고 저희는 그렇게 입장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하나……

○소위원장 이해식 예,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지금까지는 하위법령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로 해석합니까? 그게 불분명해서 훈령·예규·고시 이렇게 명시해서 입법을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 의도는 맞는데, 당연히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에다가 지침이라든지 기준 같은 걸 주면서, 실무자들은 거기에 규제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처리 방식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법령보다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중앙부처 뭐에 걸려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자라는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입법 개정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이게 하위법령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자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제가 질문 하나 좀……

수석전문위원께서 양부남 의원님안이 조금 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위법령, 그러니까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에서 예를 들어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면 그 하위법령은 이제 시행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그런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그러면 그 시행령의 하위법령이니까 예를 들면 훈령이라든가 무슨 지침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위법령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 이 하위법령이 도대체 뭐냐?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 하위법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해서 그 하위법령이 뭐다라고 하는 걸 구체화해 줘야, 그래야지 직접 제한하거나 또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는 없는 일종의 하위법령의 내용이 나온다 이거지요. 알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게 되게 모호해지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준 건데 그런데 양부남 위원님처럼 이걸 포함한다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더 모호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 시행령, 부령 또한 그러한 법규명령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를 정할 수 있는 훈령·예규, 즉 법령보충적 훈령·예규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부령,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입니다. 그러면 토털 최소 4개 정도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말한다고 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법령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훈령·예규만 한다는 것으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남 의원님안 포함해서 이 앞에 당연히 들어가고, 법률·대통령령·부령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령 위임에 따른, 즉 법령보충적인 훈령·예규가 들어간다는 것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도 이 조항은 명확한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을 이렇게 괄호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법령, 법령이고 헌법에도 법령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입법기술적 한계로 보통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 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조항을 놓고 봤을 때는 맞지만 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전체 체계로 봤을 때는 모호성은 지방자치법에서 좀 더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전문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부령 그리고 거기서 위임된 훈령·예규·고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러면 일단 양부남 의원님안은 반영하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예, 양부남 의원님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만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 지금 자료에는 미처 없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12조, 다른 조항에서 시군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0조에서 위반할 사유가 들어오면 12조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행안부에서 그에 대한 검토의견이랄까 조항 정비는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랑 협의를 하고 혹시 충돌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지금 30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30조인데 지금 자료가 없긴 합니다만 30조 말고도 다른 조항에, 지방자치법 12조에서도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조항 12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만 고치면 그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상충되는 문제.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행안부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차관님, 이 12조하고 30조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한번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보고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 13쪽입니다.

3번 사항의 가와 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번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관련입니다.

먼저 가번,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부분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행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방의회의원이 10명이면 5명입니다. 다만 2분의 1 범위이기 때문에 11명인 경우도 5명이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늘리자는 것으로써 민형배 의원안 및 이광희 의원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자면서 구체적으로 민형배 의원안은 광역, 기초는 아닙니다. 광역의회에 한정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를 의원정수 범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광희 의원안은 전체를 대상으로, 즉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대상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를 의원정수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원이 10명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10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양부남 의원안 및 정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의 상한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도록 하여 의원정수가 훨씬,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상한을 1인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기준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11명이 있으면 5.5명이지만 5명만 둘 수 있는데 양부남 의원안과 정부안에 따르면 올림하여, 즉 5.5명에 올림하여 6명을 둘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 추가적인 예산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을 하실지 말지 혹은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실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민형배 의원안에 따르면 시도, 이거는 광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최대 444명이 증원되고,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약 46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광희 의원안에 따를 경우 시도에는 444명 이상, 시군구는 1518명 이상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되며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약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양부남 의원안 및 정부안에 따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자는 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천, 세종시, 경기도 등 4개 시·도의회 및 127개 시·군·구의회에서 정

책지원 전문인력 상한이 각각 1인 증원되어 연간 약 1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나번,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박정현 의원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정춘생·이광희 의원안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한다든지 그런 공무원을 말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 중에서 여름에만 일한다든지 그렇게 채용하는 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직공무원, 이름하여 통상 공무원입니다, 비임기제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빼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면서 시간선택제와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원 1309명 중 351명이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며 군의회의 경우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56%를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주로 집행부 소속 공무원인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군·구의회를 중심으로 일반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고 휴직·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13쪽,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소수점 이하 올림 수준으로 증원하는 양부남 의원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인력 증원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해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는 하면서도요, 만약에 이게 일대일 수준으로 증원하게 되면 결국 지방재정 부담, 아까 광역만 봤을 때 444명이 늘면서 연간 460억 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 안은 시·군·구 1518명까지 가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반되는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아시겠습니까만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지방의회법 개정 그러니까 자치법에서 떼어 내서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로드맵 같은 걸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희 정부 측 안을 말씀드리고요.

18쪽의 나번,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도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선택의 폭이 있는데 정춘생 의원님 안은 이것을 일반직은 놔두고 일반임기제로만 하게끔 하자는 뜻이고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간혹가다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 갈등이 있을 때 일부 단체장께서 파견됐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보시면 특히 군 단위는 인력도 많지 않지만 50% 이상이 지금 7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못 구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만 지방에서도 좀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정회한 이후에 속개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본회의 산회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잠시 중단을 하고 아까 지방자치법 30조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또 정부 측 의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심사자료 1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30조의 시·군·구 조례·규칙 입법 한계 관련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 올리면 현행 30조의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개정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부남 의원님이 개정하고 계십니다. 즉 시·도에 위배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시·군·자치구 조례·규칙의 범위를 넓혀 주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개정을 하다 보면, 아래 조항에서 보시듯이 현행 12조 3항에—‘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밑에 부분입니다—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부남 의원님처럼 개정한다고 하면 현행 다른 조항과 상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조항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설명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현행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산 규모 8000억 이상인데 그 지역금고는 현재 37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25년 7월 법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37개 중 8개 금고에서 상근감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자체에는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800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개정하려고 검토 중인 지방자치법 제30조 개정안은 시·군·구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의 조례·규칙을 따라야 하는 시·군·구 조례·규칙 대상 사무를 특정하고 있는 데요.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시·군·구가 사무 처리 시 관할 시·구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하는 시·군·구 사무 범위의 해석에 다소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30조 개정안은 좀 보류해 주시면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0조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 자료 1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및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해식 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여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보니까 크게 보면 비용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좌관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재정부담 증가하고 개인정보좌관…… 개인정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좌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책지원관을 별정직이든 임기제든 두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는 의원 개인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상근적 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지방의회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보좌직원들이 있고 국회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구조지요. 그런데 현재의 지방의회는 개인이 그냥 안 나가면 개인 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전남광주통합안도 그렇고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전북특별자치

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부산도 그렇고요, 이런 곳의 특례조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단체장의 권한이 엄청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근 보좌하는 누군가,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정책지원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광역시도의회 의장님들이 어저께도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강화가 될 수 있겠다,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차관님은 전남광주 통합할 때 이것 6월 달에 해 주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6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지금 6월입니까? 지금 벌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이것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법 6월 달에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말씀드린 게 맞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거나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 전체를 총괄하면서 볼 때는 분명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인구도 많고 현안도 많은 데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재정 여건도 좋은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특히 시군구 같은 데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금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가는 부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광희 위원** 서로 다 얘기 많이 하고 아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해 봅시다.

서울·경기 필요하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잠깐만,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지방의회법을 9월 달에 다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의 내용은 결국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역시 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가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이 문제는 그때 지방의회법을 다룰 때 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님 말씀 마저 마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채현일 위원님 발언하시고 권영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간사님, 그러면 약속만…… 9월 달에 올리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예, 9월 달에……

○**이광희 위원** 확실하게 올리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법안도 다루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논의 안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런데 의견은 한번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지방의회법 제정 현황 왜 늦어지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면 법적 제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기억을 해 보시면 임기를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책임성 강화 방안을 또 보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인척이나 이래서. 저희가 회계 제도하고 지방 의원들 이런 것을 어떻게 답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 그러니까 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연락이 되는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해외연수 안가기로 한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그런……

○**이광희 위원** 이것 통과시키자고 올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이광희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 차관님, 이게 어쨌든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전문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공무원이 파견 가서 하는 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의회의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시군구, 시골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처우가 열악한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보수 수준, 처우 수준이 거의 6·7급, 7·8급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의회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려면 그보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현일 위원** 차관님, 여기 행안부 의견에 의회 개인정보관으로 운영될 우려다, 재정 부담 증가다, 이 외에 또 안 되는 근거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17쪽에 보면 전문인력 간담회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채현일 위원** 뭐라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못 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두 가지 이외에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가장 큰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정부담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지방재정이 몇 조인지 아세요? 300조 시대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40조, 30조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준인건비 얘기를 했는데, 460억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

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경기도·서울 같은 경우도 수십조, 수조 또 지방 기초 같은 경우도 대부분 1조가 넘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은 그나마 낮지만 기초 같은 경우는요 거기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책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이 천차만별이에요. 국회하고 달라요, 시의원들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국회보다도 그쪽의 양이나 질 차원에서 정책지원관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국회에서도요 보좌관·비서관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때도 이 논리로 반대했어요, 돈 든다.

그리고 개인보좌관 두는 게 뭐가 문제예요? 또 개인보좌관 안 두게끔 의전이나 잡일 또 행정 잡일 못 하게 하면 됩니다, 뭐 정책지원실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과 기초를 보면 기초의원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좀 높아요. 왜? 그 범위가 작잖아요, 예산이나 인구 규모나. 그런데 광역은 경기도 보세요, 서울 보세요. 그 엄청난 수십조 예산, 법안, 조례, 그것을 어떻게 시의원·도의원 혼자 감당합니까?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에서 순차적으로 1 대 1을 하고 그다음에 해 보고 나서 기초를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한다거나 또 하나는 조례에 정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로 정수 기준을 차등화해 가지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자치분권 2.0, 30년, 대통령 국정과제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수십조 원 감시하고 하면서 수천만 원 쓰는 게 나중에 몇십억, 몇백억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아끼면 이게 더 득 아닌가요? 투자지요, 투자. 이것을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개인보좌관으로 쓰지 않을 방안 그것을 고민하시고. 재정부담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차관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이해식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제가 광역행정을 해 본 입장에서, 또 이해식 위원님이나 채현일 위원님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의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개인 개인의 역량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시도민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이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 늘려 주는 거지 지방의원들 편하라고 비서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국민 여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그래서 개인보좌관의 문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의원·구의원·도의원·군의원들한테 개인 비서 주려고 국민 세금 쓴다고 그러면 아마 찬성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 보좌 기능은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결국은 지방비로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1인 1보좌관제로 될 경우에는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편차가 다른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시의원들은 1인 1실입니다. 자기 방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1인 1실이 아니라 2인 1실, 어떤 데는 3인 1실 이렇게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좌관·비서관까지 1인 보좌관으로 하면 아마 공간 문제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비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 많고 광역시 단위는 괜찮은데 지방도 단위로 가면 군의원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전체 인구는 2만이 안 되는 데도 많습시다. 그런 곳에 정책보좌관까지 계속 늘려야 되냐, 인구가 많고 의원들의 업무량과 그리고 의원 1인당 시민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군의회도 1인 1명씩 준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러셨는데요. 광역의원들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1인 1보좌관 해서 비서 준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풀(pool)제로 해야 돼요. 만약에 1인 1정책보좌관으로 될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수준들이 높습시다, 정책보좌관을 풀(pool)로 뽑거든요. 공모하면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 1명 공모하는 데 32명이 몰렸습시다. 온 사람들의 경력과 이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1인 1보좌관으로 가면 결국은 의원들이 자기가 자기 비서 뽑듯이 뽑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정책 보좌 기능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광역 단위부터 정책 보좌 기능은 좀 강화한다, 풀(pool)로 지원하도록 열어 준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면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기도 쉽고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한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방의회법 다룰 때……

○이광희 위원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소위원장 이해식 오늘 토론하지 마시고 의회법 다룰 때 그때 토론해서, 그때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때 이 문제는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러면 다음으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4번, 이장·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장·통장의 임명·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들은 각각 이·통장 설치의 재량 인정 여부, 직무규정, 자격·임명 및 활동수당, 상해·사망 보상금, 교육훈련 및 이통장연합회 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법체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규율할 경우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경직성도 있고 전국 전체의 통일성은 확보하나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스를 보고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반영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과 23쪽 박스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려 보면 이·통장은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는 것으로 하며 그 근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따라서. 다만 직무에 관한 규정은 정부안에 따라서 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법률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및 임명은 정부안에 따라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령을 그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부안에는 활동수당 근거는 없지만 활동수당 근거는 넣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활동수당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과 상해·사망보상금과 이·통장연합회는 정부안에 따라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규정은 정부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장·통장은 지방정부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라는 전국적인 통일성 외에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22쪽입니다—이·통장 근거를 두되 의무설치하고 직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격 및 임명은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읍·면·동장 임명하고—23쪽입니다—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두고 교육훈련, 상해·사망보상금, 이·통장연합회는 규정하지 않으며, 위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수정의견인데 각각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나머지 조문은 기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통장 활동수당 근거를 재량으로 하고 이·통장 운영 관련 조례 위임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한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지금 이·통장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돼 있지 않나요, 수당이나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월 40만 원.

○권영진 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침인데 저희가 수당 한도를 월 40만 원까지라고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그 상한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재량으로 주는 것은 자칫하다 보면 시군별로 경쟁이 돼서 서로 올려 주기 경쟁이 일어날 우려 없습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시 설명드리면 한도를 저희가 정해 드렸는데 전부 다 똑같이 40만 원 한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40만 원으로 주는 것보다는 형편에 맞춰서 3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의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상한선까지 주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 안 됩니다. 행정을 해 보면 다 와서 경기도 어디 가면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올리기 경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당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만 여기다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 한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저희는 액수나 이런 것을 여기다 정해 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그 액수나, 예를 들면 기본수당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 회의수당이 지금 2만 원씩 월 2회까지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산편성지침에……

○**권영진 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침에 의해서……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다 통일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어떤 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이 조금 선심성으로 올리면 꼭 따라 올리도록 하는 그런 구조는 막을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밑으로는 줄 수 있는데 올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직무규정도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직무규정을 빼야 되나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동장과 면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동장 직무에 대한 성격을, 공적 성격을 일정 부분 두지 않으면 이게 사적인 그런 부분들로 통장과 이장에 대한 임무가 부여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에 따라서? 그러면 대체로 기본 가이드라인은 임무도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도 그것을 굳이 법률에까지 넣으면 좀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통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규정된 법이 있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과 그다음에 지방정부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으면 더 지방자치정신과 이런 데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광희 의원님께서 했던 1, 2, 3 거기에다가 윤준병 의원의 세 번째,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이 정도는 오히려 넣는 게……

우리가 지금 법제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으로 이·통장에 대해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까지도 법제화한다면 임무 부분들도 일정한 틀에서는 법에 넣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넣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광희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서 넣을 경우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나 이런 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제가 이것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직무 관련된 규정이 시행령에는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조례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채현일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통장과 관련된 수당의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한 20만 원 주다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면서 이·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중앙정치권에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당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런데 또 새마을지회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여타 직능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통장님들이 처우를 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일하는 여러 분들 간에 약간 위화감 같은 것도 조성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은 지금 담겨 있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법으로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치권의 어떤 범주 안에서 생각한다면 조례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광희 의원님 안 정도면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행정시책 홍보·전달,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는 조례로 정해라 이런 정도로 해서 법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에 대한 직무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통장님들의 어떤 권위 내지는 이런 것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그런 선에서 조문 작업을 조금 다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시다만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안에서 직무 부분은 이광희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정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 말씀 주셨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23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통장·이장의 기준액을 기본수당은 월 4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 원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법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근거만 넣고 구체적 내용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해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괜찮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이해식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 38쪽입니다.

38쪽 5번,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때 공공협약은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공보에의 고시 등을 통해 일정한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공공협약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MOU 형식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공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협약의 목적·협약 포함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박스에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다양한 협력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별도의 법인·조직을 신설하여야 하거나 구속력이 낮은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역교통·의료·관광 등 광역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들에 따른 공공협약은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 및 행정주체 간 협력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왼쪽 박스에 정리된 부분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수정이 필요한데 38쪽 오른쪽 하단입니다. 공공협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지자체 협약에도 지자체 간 협약과 동일하게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개정안의 공공협약과 다른 법률에 규정된 협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부남 의원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안의 공공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박스대로 하되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정부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방금 설명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은 49쪽입니다.

6번, 분쟁조정기구 위원 정수 및 구성 변경 관련입니다.

먼저 왼쪽 하단 박스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행안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가 있고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분쟁조정위가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분쟁조정위와 지방분쟁조정위는 그 구성은 위원장 포함한 11인이고 당연직 5인, 위촉직 6인이며 의사정족수는 7명 이상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구성은 현행은 위원장 포함 13인이고 구체적으로 당연직 5인, 국무총리 위촉직 4인, 지명직 4인이며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위원 정수나 구성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들은 구체적으로—49쪽 왼쪽 상단입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 당연직 1인, 위촉 3인을 증원, 즉 추가하고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과반수로 변경하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4명을 추가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양부남 의원안은 정부조직 개편사항—즉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사항입니다—을 고려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이를 반영해서 13인에서 14인, 즉 1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중앙분쟁조정위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행안부는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런 개정안을 받아들이되 다만 양부남 의원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의제 처벌 조항은 하고 있는데 현행 3개 위원회 중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빠져 있습니다.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개정안들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정부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조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특히 지방분쟁조정위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이것도 특별히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 7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 주제는 가, 나, 다 세 건이 있기 때문에 7번의 가, 나, 다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근거 신설 및 행·재정적 지원 등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지자체로서 현재 지자체는, 오른쪽에 있는 고덕체 글씨입니다. 특별자자체 제도는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설치한 충청광역연합 1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황하에서 개정안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좌측 상단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 여기서 이관은 이양 또는 위임을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임은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지만 지자체에 권한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고 이양은 권한 자체를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이런 이양 또는 위임을 둘 다 포괄하면서 현재 위임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위임 외에 이양도 포함해서 이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도 사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 시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현행 위임뿐만 아니라 이양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시·도가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지자체를 의결해서 개정안을 허용해 주신다면 이러한 이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특별지자체 앞부분을 동의하신다면 같이 하면 좋은 지원 사항들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68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등의 사무의 환원 규정 신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번을 반영하신다면 그에 맞춰서 환원하는 규정도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에 이관된 사무를 구성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특별지자체가 해산된 경우, 특별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특별지자체에서 이관받은 사무를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특별지자체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관된 사무를 다시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성 지자체의 변경 및 특별지자체 해산 등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 이관 사무 환원 시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71쪽 다면, 특별지자체에 대한 준용 규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에 준용되는 규정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데 새로 준용이 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특별지자체의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사항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회행정기관 설치 등의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로 준용 배제하는 규정은 특별지체와 어울리지 않은 규정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예컨대 일반 지자체에 대한 임시회의 며칠 내 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번의 특별지자체 부분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조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먼저 첫 번째 시·도 사무 이관 근거 마련이라든지 행·재정 지원 및 국가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사무의 환원 절차 이것이 해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사무의 환원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개정안에도 동의하고 특히 마지막 특별지자체의 의원이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 등을 통해서 특별지자체가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예, 마지막 2건 있습니다.

74쪽입니다.

8번과 9번 2건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8번, 자치분권 사전협의 운영근거 규정인데 오른 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작년 4월에 있었습니다—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검토의견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하되 앞서 위원들께서 채용하신 공공협약 제도라든지 특별지자체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1년 뒤 시행하는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지금 못 하겠는데 위원님들 지금 어디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권영진 위원 의결정족수 몇 사람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총 아홉 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다섯 분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이광희 위원님 아마 예결위장에 계실 것 같아서 오시는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요.

○양부남 위원 2항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결론을 못 보고 가서요.

○소위원장 이해식 그것은 양부남 의원님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정책지원 인력은 0.5 올리는 것 그건……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 어떻게 됐는지 알고 가야 해서.1135//

○권영진 위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방의회법에 또 다루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9월 달에 다룰 때 그때 결론을 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해서……

○양부남 위원 제 안은 2 분의 1로 해서 0.5 올리는 걸로 제가 반올림하는 걸 내놨거든요.

○소위원장 이해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원 정수 2 분의 1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하는 것으로.

○양부남 위원 11명이면 옛날에는 5명인데 6명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그렇지요. 정부안지요.

조금 기다릴까요?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아니면 접경지역도 계속 심사를 하시면……

○소위원장 이해식 접경지역 심사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의결하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총 2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접경지역 특별법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쟁점은 4개 주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의견 제출입니다.

개정안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접경지역 내에서 더 이상

군부대 부지로 활용되지 않게 된 토지, 미활용 군용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그 현황을 제공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해당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 제71조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처분 의견제출 특례를 접경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접경지역에는 1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7개 시·군은 강원특별법상 미활용 군용지 특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접경지역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같이 접경지역 간 제도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와 행안부도 수용, 즉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것으로 강원도특별법의 예에 따른 것이고 정부도 수용하고 있으므로 입법에 반영하되 일부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 이상식 의원안은 ‘국방·군사시설 2조’ 이렇게 돼 있지만 수정의견은 2조 6호라든지 그다음에 미활용 군용지의 개념을 좀 더 간결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란을 보시면 올해 11월 20일부터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 현황 제공이 달린 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또한 이상식 의원안은 좌측 하단을 보면 군용지의 처분만 하고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군용지의 처분 외에도 관리도 포함했습니다. 그 이유는 5쪽에 보시듯이 현재 다른 법에서는 관리 또는 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식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그런 사항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번,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전 정리 및 비용처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지상물·지하 매설물·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거나 정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제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지하 매설물·위험물·토양오염 등을 제거 또는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량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강원특별법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예에 맞춰서 조문도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3번,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적 활용 및 처분 특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고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며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상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하며 해당 토지의 처

분·활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지상물 등의 취득·활용과 관련하여 이상식 의원안은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사용 중이거나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원특별법과 기본이 동일하고 행안부와 국방부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11쪽 좌측 하단에 김성원 의원안은 미활용 군용지는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은 지자체가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상식 의원안에는 동의하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게 양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김성원 의원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즉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이상식 의원안의 교환은 수용하고 김성원 의원안의 양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과 조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칙입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특별자치법에 따른 것이고 접경지역 내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사안이며 일부 최신 법적 상황을 반영했고 국방부의 반대 상황을 반영해서 조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등의 2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등 2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법안을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마약류 검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SNS 등을 통한 직접 구매 사례도 발생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접근성과 확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였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에도 따라—4페이지입니다—군인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국가행정의 연속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직무상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 여부와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재산 등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을 가졌는지, 그러한 직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근거했을 때 그 검사 대상 제1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검사는 공무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검사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유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조문대비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 의무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에 따라야 한다면 수검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적 검사를 영

장 없이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자기결정권 침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입법례에서도 수검자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검사 실시권자와 세부기준 마련 위임법령에 국회 등 헌법기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 실시와 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을 각 헌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7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을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넓히기 위해서 소속 장관 부분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까지 넓히는 내용이고.

그다음, 8페이지에 ‘실시할 수 있으며, 따라야 한다’ 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상 1호를 4호에 나와 있는 위임과 같이 합쳐서 수정의견 3호에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의 밀접한 관련성 또는 그 밖에 담당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2항에 ‘시기·주기’로 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상 주기는 시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로만 하고 ‘대통령령’ 부분을 ‘대통령령 등’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징계시효 연장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등 유포 행위에 대해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대한 징계시효는 일반적 징계사유는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 회령·유용은 5년, 성 비위 시는 10년과 같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등 유포 행위는 일반적 징계사유로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구성요건으로 범죄로서 개별 행위가 계속적으로 누적·반복되면서 일정기간 이후 범죄가 성립되는 특성이 있고 음란물 등 유포 행위는 단기간에 적발되기 어려운 측면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범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 등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불안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채현일 의원님 안에 따르면 마약류 검사와 징계처분 결과 통보, 징계시효 연장 모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님 안은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법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및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일정한 유예기간으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징계시효 연장은 신분상 제재가 엄격해지는 변화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비위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홍보 및 숙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신설과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과규정 및 적용례입니다.

징계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해서 채현일 의원님 안에서 개정안의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시행 후 이루어졌다면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해소 등 실익이 크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징계시효 연장 효과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경과규정과 적용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법 기술상 적용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대개 깔끔한 내용 같습니다.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마약류 검사 안에 보면 지금 채현일 의원님 안은 소속 장관은…… 한다. 그런데 수정안은 소속 장관 또는, 여기서 말하는 소속 장관은 행정부처의 장관을 이야기 하겠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소속 장관 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쪽 나와요.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마약류 수사·단속·수거·압류·몰수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금 국회사무처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항이, 앞에 이러한 게 필요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소속 장관을 두고 뒤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앞에 나온 소속 장관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해서 3개 조항이 나오는데 이 장들이 속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약류 제조·수출입·관리 관련 직무에 공무원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의견 있으세요,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월에 마약에 중독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차단되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마약에 또 중독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해 주시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기준이나 방법, 시행 시기를 만들면 그 해당되는 사람, 모든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됐으니까 병원이란든지 지정해 놓은 데 가서 검사를 받고 그것을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그 대상은 여기 구체화시킨 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체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인사처 차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안은 소속 장관으로 발의된 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시면서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이외에도 이렇게 하지만 헌법기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약류라는 게 공무원, 행정부 국가공무원뿐만 아니고 지방공무원 또 헌법기관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꼭 지금 헌법기관에 이런 업무가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한 건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고 정부 측도 이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

○양부남 위원 그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 법의 문맥상 말이 맞냐 이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관위원장,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직원이 됩니까? 마약류의 제조·수출입…… 1, 2항이 전혀 관련이 없을 텐데? 이것을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취지는 그것 아십니까? 법원행정처나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입직 전에 마약류에 뭔가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을 걸러 내야 되는 것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입직 전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6월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통해서 국가공무원 들어올 때 이미 걸러 내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업무 중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주로 직무의 특성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아는데 법률이 맞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 직원이 마약을 투약을 했어요. 이 조항의 어디다 대고 해당이 될까

요? 아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 직원이 재판에 관한 사무를 하는데 무슨 마약류와 관련이 되겠습니까? 내가 취지는 아는데 법이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권영진 위원 3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전보장?

○양부남 위원 굳이 나도 3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3번으로 가는 게 너무 논리 비약이야. 그래서 내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법이 맞지가 않아요. 국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마약 투약하면 검사해야지요. 어느 조항에서 검사시킬 겁니까, 여기서? 해당성이 없어 버리는데?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업무 종류나 이런 게 있다면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게 적용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전문위원님, 굳이 이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문구와 각 호를 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아니면…… 그렇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 빼고 각 호를 다 드러낸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황승기 모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적어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게 법의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황승기 예.

○임호선 위원 이게 의무조항이 아닌데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럴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지적이 맞잖아요. 헌법재판소라든지 중앙선관위에서 1·2·3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마저도 재량이라고 한다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다 열어 두는 것과 굳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의 실시대상조차도 2항에서는 영에다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대상을 굳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을 정할 때 소속 공무원의 예를 들어 특정 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다 담으면 될 것 아니에요?

○양부남 위원 지금요 이 조항에 1호와 2호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것이고 3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가 되냐는 그 대상자는 기본권이 침해하게 침해되는데 과연 1항 1호, 2호는 법률에 정하고 3호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회니까 국회사무총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회 직원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정할 겁니까? 이 대상을 지금, 같은 국회 내에서 누구는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이게 직장에서 얼마만큼 위화감

이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임호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한다면 각 호의 규정을 빼고 정하는 게 이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합리적이고 합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이해식 전문위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전문위원 황승기 지금 사실 마약류 검사를 어떤 공무원까지 넓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도 국정감사 때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너무 확대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범위를 구체화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무상 자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큰 직무상 책임이 있는지 볼 때 각 호에서 한 마약류와 1호·2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약을, 직접적으로 마약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게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포섭되기 때문에 한정해 줘서 1·2호 정도는 직접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속 관서의 장이 한대라고 된다면 전문위원의 말이 맞아요. 마약류에 관련한 사람들이 많지요. 약사나 의사도 마약에 관련되고 단순히 경찰과 수사기관의 종사자만 마약에 손대는 게 아닙니다. 약사도 손대고 의사도 손대고 연구기관의 사람들도 손대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 직원에 누가 있냐 이것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국회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속 관서의 장으로 규율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제가 봐도 이것은 원안으로 가는 게 특별히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래서 그냥 소속 장관은 채현일 의원안, 원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다만 지금 각 호 중에 1호가 너무 조금 말하자면 추상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 같아서……

○임호선 위원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원안으로 가기에……

○임호선 위원 원안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어차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법에다 담기 때문에 각 호를 다 날리고 필요한 검사의 실시대상을 영을 정할 때 소속……

○소위원장 이해식 영에다가 위임한다, 다 전체적으로?

○임호선 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이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1호와 2호, 3호하고 또 4호하고……

4호에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렇게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기관 넓히는 문제는 추후에 한다 하더라도 우선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소속 공무원의 마약류 관리 관련된 검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명확히 담으면 되지 1·2·3·4호를 굳이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물론 시행령에다가 담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전문위원 황승기 2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아, 2항에? 2항에 있네, 여기 보니까.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2항에 돼 있어서……

다만 전문위원 말씀은 지금 각 호 중에 2호·3호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론 재량규정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그러면……

○양부남 위원 제 생각은요 채현일 의원안에서, 86조의 채현일 의원안을 골격으로 해서 그중에서 채현일 의원안 중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를, 따라야 될 의무조항을 날린다면 채현일 의원안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해식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양부남 위원 있다로만 한다면 채현일 의원안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굳이 한다면 채현일 의원안에서……

○소위원장 이해식 각 호도 살리고요?

○양부남 위원 각 호도 살리면서……

○소위원장 이해식 각 호도 살리면서.

○양부남 위원 채현일 의원안에서 2호와 3호를 1, 2호로 하고 수정안처럼 1호와 4호를 합쳐서 3호로 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수정안은 주체가 좀 맞지가 않아요.

채현일 의원안에서 하되 ‘소속 공무원은 검사에 따라야 한다’를 날리고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1호를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으로 하고 2호를 마약류의 수사·단속으로 하고 3호를 수정안처럼 국가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임호선 위원 다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입법취지라면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2호·3호는 재량으로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예컨대 의무적으로 하게끔 실시하여야 한다고 별도 조항에 담아야 하고요. 그 밖에 재량으로 실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재량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그 밖에 재량으로 담는 것을 2항에다가 넣고 의무조항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2호·3호를 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밖의 공무원에는 1호, 4호를 영으로 정해서 더 넓히는 문제는 위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담는다면 저는 각 호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

하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저도 임호선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마약류를 수사·단속·제조하는 2호·3호는, 채현일 의원안에서 2호·3호는 의무로 ‘따라야 한다’로 하고 그 외에는 그냥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소위원장 이해식 그 외에 지금 수정안 3호로 정리된 것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권영진 위원 아니요, 제가……

○소위원장 이해식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현일 위원 하여튼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큰 틀에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법원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4페이지인가요, 국가공무원법에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약류나 이런 것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 규정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의 자유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또 부처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행정 부처’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론이나 1·2·3호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채현일 의원님 안은 행정공무원에 한해서 하고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저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그냥 바로 2를 하면 어때요? 마약류검사의 실시 대상, 실시 시기 그다음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구체적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법에 하지 말고.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4쪽에 보시면 경찰공무원법 입법을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권영진 위원 여기는 1·2·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니까 각 호를 지우고 1항·2항을 통합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권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1항·2항을 통합하자.

○소위원장 이해식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황승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약류 86조 신설과 관련해서 채현일 의원님 안을 보시면 ‘소속 장관은’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죽 하고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각 호의 내용은 다 빼고 바로 2항으로 넘어가서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대상도 여기 나오니까.

○소위원장 이해식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이광희 위원 그럼요. 그렇게 가야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21항, 24항부터 제26항까지 그리고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총 9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36항, 총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뒤로 넘겨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소위자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근무예정 지역이 비수도권인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에 연고를 둔 자에게 성장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산점 부여의 핵심요건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채용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부여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례와 부여대상, 가산 점수 및 채용 상한 등을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사례가 각각 존재합니다. 표에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부여대상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법에서 정할 것인지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까지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항에서 논의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거주기간의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도 지역구분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이 별도로 거주기간을—만약 개정안대로 간다면—정할 수 있도록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헌법기관규칙을 포함한 ‘대통령령 등’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험생들의 신뢰보호 원칙과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시험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인사혁신처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전문위원님이 벌써 수정의견을 내셔서……

○전문위원 황승기 지금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개정안대로 감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1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 개정안과 같이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기간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지 아니면 적어도 법률에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15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임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과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저도 지역 잘 아시다시피 증평·진천·음성 그쪽 군 단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당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도를 전제하는 겁니까? 시·군

을 전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성군에서 공직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음성군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정착 조건을 만들어 줘 가지고 청년을 유입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가지고 거기에 터 잡고 살게 하는 것과 이게 결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그리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논의할 주제다라고 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옆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조심스러운데 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책 결정하실 사안입니까?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산점은 원래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은.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 시험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잠깐 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래 그 지역에서 선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지역가산점은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가산점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다만 그것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 좀 있으니 그곳에 살았던, 대구에 살았다 이러면 거기에서 15년 이상이면 초·중·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 줘야 가산점을 받게 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전체 다도 아니고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그 시험과 관련된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법안을 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15년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소위원장 이해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얘기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거기에 규정된 15년은 채용 관련된 가산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황승기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대상이 되는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이고요. 시도에서 채용하는 국가직 공무원 5급·7급·9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양부남 위원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 설명을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속하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지역가산점이 있다. 있는데, 그것을 몇 년 이상으로 하는지 규정을 명확히 안 해 놓으니까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지인이와 가지고 짧은 기간만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오래 산 사람들이 그 제도에 부응하는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주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자는 거지요, 늘리자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해식 인사혁신처 차장님,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가산점이 들어가는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그 지역의 교대를 졸업한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응시할 때 하는 부분은 응시요건의 경우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한다고 반드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현재는 약간 없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혼동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번에 발의하신 이 내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정주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정 거주요건을 15년으로 지금 설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산점을 안 주고 있네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현재 지역구분모집이나 이 부분에 거주요건은 있는데 그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시자격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응시한다는 것과 일정한 연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저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그동안 기존에 여러 직역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늘리자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라는데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런데 위원님, 응시요건 또 가산점 이 부분은 잘 모르시면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교육공무원은 그렇고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고 또 이광희 위원님이 약간 설명을 틀리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그 가산점을 주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장을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몇 년간 살아서 이 시험을 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하겠다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시험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차별이라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가산점을 줬을 때 과연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실제로 그 시험을 위해서 많이 정주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는 없어도 뭔가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히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15년 살아서 가산점 줘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로 전근 가면 어떻게 해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살고 지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부분은 아직은 저

회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산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 또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3조 지역균형발전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할 때 고려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부 다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을 때의 적용요건하고 또 무조건 그 지역에 근무했다고 다 합격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거주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저희가 만점의 3% 이내에서, 지금 현재도 자격증이라든가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가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미만 범위에서 주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점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전부 합격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합격 예정 인원의 10% 내에서만 제한을 뒀서 합격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수험생들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약간 고려한 제도로 저희가 설계, 동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항보다 헌법에서 더 엄청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공부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가산점 문제는 무척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칫……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군청에서 공직자들, 지방공무원 모집하면, 10명 모집하면 미달 사태 나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차장님도 계시는데 이 가산점 문제를 여기서 지금 이 정도 논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광희 의원님 안이 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거주기간 그걸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1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초중고를 졸업하고 일부 추가된 기간이고요.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분모집을 하는 시험에, 국가직에서도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가직 중에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구분을 국세청에서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집했을 때 지역 구분을 하지 않으면 지원자 자체를 모집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뽑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 부분은 저희가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신규 임용 지역 인원을 보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재직 중에 있는 인원의 비율이 약 78%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구분모집에 대한 타당성도 있는 거고 그 경우에 약간 일부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구분모집과 가산점은 다른 정책수단이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차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게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그런 것을 과하게 해칠 정도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공정성을 과히 해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인구소멸시대에.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시대에 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격 예정자의 10% 범위 내에서 3% 가산점이면 저는 역차별 우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15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초중고, 한 12년 정도 해도 저는 그 지역 인재를 그 지역에서 선발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2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갖는 역차별이라는 그런 마이너스적 기능보다는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긍정적 기능이 다소 크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었지만 쿼터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겠지만 이것 몇 년간 그 지역에서 산다는 제한 규정을 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시험 합격하고 다 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일단 저희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최소 5년의 제한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5년이 너무 짧은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예, 자료 요구해 주세요.

○임호선 위원 인사혁신처 차장님이나 행정안전부차관님이 갖고 계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10년간, 지금 여기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지역구분모집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별·직렬별 선발인원, 지원자, 경쟁률, 미달 현황, 첫째.

두 번째는 이분들 합격자의 3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타 지역 전보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산점이 부여됐을 때 시뮬레이션. 지금 모집,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가산점을 부여했을 경우에 어떻게 공직사회가 변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가산점 문제가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자칫 그런…… 이게 그냥 여기서 저희들이 막연한, 몇몇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가 조심스럽고요. 자칫 가뜰이나 지금 청년 문제가, 2030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

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지요. 일단 지금 논의하고 있는 37항은 다음번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그리고 34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사한 거기는 한데 의사일정 제38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승기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근무예정지역으로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총인구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히 집중되는데 주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순유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역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개정안 적용 시 2026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의 지역구분모집 선발인원 6016명 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예상 인원은 162명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162명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지역구분모집 시 지역가산점을 특례의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가산점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역구분모집의 실시와 거주지 제한의 여부 및 적용 범위가 지자체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역가산점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을 고려할 때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사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특히 의무를 재량으로, ‘할 수 있다’로 한 그 부분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앞서 국가공무원…… 이게 지금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이번엔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그러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건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임호선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모든 지방정부가 아니라 89개 인구감소지역에만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택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끔 제량으로 뒀기 때문에 울릉군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15년인데요.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어디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공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옵션을 더 제공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그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4쪽을 보시면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을 때 연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162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도. 그래서 시군 단위로 봤을 때는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이고요. 현재도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해서 국가와 별도로 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무원 거기가 넣은 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저도 전적으로 차관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임호선 위원님, 조금 양보해 주시지요.

○임호선 위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하나만 생각하시고 둘은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떤 것 말씀하시는……

○임호선 위원 거꾸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우수인재를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증평군에 영입할 수도 있지요, 가산점 줘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수인력이기 때문에 3%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이하를 뽑을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상반된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은 가산점 주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미달입니다. 뭘 알고나 얘기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돼도 역으로 보면 아무 부작용이 없지요.

○소위원장 이해식 아니, 미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의 타당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임호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달은 뭐냐면 특정 직렬 있습니다. 하나나 두 명, 뭐 시설이나 자격증 갖고 오는 친구들은 미달이 많고요. 그것은 어차피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10명 이상 뽑아야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임호선 위원** 차관님, 아무튼 가산점 문제는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논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89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강원도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했었는데 인제나 양구에 근무했다가, 저희는 또 이게 3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은 거기 있다가 결혼하기 직전에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쉽게 합격한 다음에……

○**임호선 위원** 이쯤하시지요. 이쯤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임호선 위원님, 우리 행안부에서 자료도 이렇게 충실하게 첨부한 것 같은데……

○**임호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해식** 어떤 자료요?

○**임호선 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된…… 제가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상의해서 자료를 일단 확보해서 주세요. 최근 경쟁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황 자료부터 보고 판단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집으로 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 주장으로 안 합니다.

○**권영진 위원** 다음번에 같이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예, 다음번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묶어서 다음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6시가 됐는데 더 이상 심의하기가, 심사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영진 박상웅 서명옥 양부남 이광희 이해식 임호선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균형발전국장 김군호

정책기획관 이지성

법무담당관 이명구

국가기록원

원장 이용철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